

2025년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통합공고

UNIST에서는 울산·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울산·울주)」 개별특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1

공통사항

■ 지원규모 : 총 354백만원 (약 30개社 지원)

■ 지원기간 : 2025.06.01. ~ 2024.12.31. (7개월간)

※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방비
기업 혁신 지원	혁신역량 초기기업지원 (통합Ezbaro 활용)	목적 특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270
		내용 · 시작품·시제품 제작 : '직접 제작'과 '외부제작'으로 분류 - 직접제작: 인건비, 재료비 및 기타 제반 직접 제작 비용 지원 - 외부제작: 외부전문기관 활용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제품고급화 (외부전문기관 활용) - 기존 제품의 서비스 품질 개선, 성능 업그레이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 · 기술고도화 (외부전문기관 활용) - 특허동향분석, 선행특허조사 등 - 기술 권리성 강화를 위한 특허방어전략 수립 및 특허맵 구성 등	
		대상 최대 30백만원 x 9개 기업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지원	목적 지역 내 시험분석 인프라, 국내외 기술규격 및 품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상용화 기반 구축	30
		내용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신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 · 국내외 인증 지원 -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대상 최대 15백만원 x 2개 기업	
	기업자문지원 (애로기술, ESG컨설팅)	목적 지역 내외 특화분야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Pool 구축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 내재화	24
		내용 · 전문가 활용비 지원(예산 소진까지) - 사업분야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 일반컨설팅 최대 1.5백만원 지원 ※ 일반컨설팅 수행기업 중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최대 3.5백만원 지원 예정	
		대상 일반컨설팅 1.5백만원 내외 x 16개 기업 내외	
	Open Innoavation 사업화지원	목적 특화분야 관련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주기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30
		내용 ·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전략 수립, 투자유치 및 기타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회계 등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 후속 R&D 기획 지원 (외부전문기관 활용) -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 ·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제작, 바이어 발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신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소요 비용 지원	
		대상 최대 10백만원 x 3개 기업	

※ 세부 사업예산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특화분야: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지원절차(공통)

단계	일정(예정)	추진내용
모집공고	2025.04.15.	- UNIST 및 재단 홈페이지 등 공고 개제 -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
↓		
신청서접수	2025.04.15. ~ 2025.05.14.	-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선정평가 (UNIST)	2025.05.20.	-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혜기업 선정
↓		
과제 협약 등	2025.06.01.	- 2자(기술핵심기관-특화지원기관) 협약 및 수혜기업 확약서 제출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사업기간 중	- 과제 추진 현황 확인 (필요시) - 중간 성과 점검 등 (필요시)
↓		
사업결과점검 (UNIST)	2026.1 중	-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 결과물 평가 위원회 개최
↓		
사업결과 통보	2026.2 중	- 특화지원기관 및 수혜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
↓		
세부사업 정산	2026.2 중	-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자문지원 일반컨설팅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기업자문지원 일반컨설팅은 통합공고 모집 종료 후 수시모집으로 전환되며, 심화컨설팅은 별도 진행 예정

※ 기업자문지원 일반컨설팅 종료 후 평가(요건검토 등)를 통한 심화컨설팅 지원

■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비(최대)	사업기간
지역기업 성장지원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30,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5,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기업자문지원(일반컨설팅)	1,5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10,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 기업자문지원: 컨설팅지원금 1.5백만원 /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진행 시 최대 3.5백만원 추가 지원 예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04.15.(화) ~ 2024.05.14.(수) 24:00까지

○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메일제목: 사업명_기업명)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서준혁	052-217-1766	hyuk@unist.ac.kr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임종희	052-217-1765	ijhee@unist.ac.kr
기업자문지원	임종희	052-217-1765	ijhee@unist.ac.kr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임종희	052-217-1765	ijhee@unist.ac.kr

■ 신청자격 검토사항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술핵심기관은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기업자문지원의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사전 지원 제외 조치사항	- 신청기업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기관, 외부전문기관대표자의 경우 - 총괄주관기관에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자는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 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 진행 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

※ 울산울주강소특구 사업 수행 시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이 적용되며, 개정 등 규정 변경 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대상기업이 필요로하는 맞춤형 지원(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및 기술고도화 등)을 직접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70백만원 (대상기업 9개社 내외,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① 특화분야기업
 - ※ 특화분야 :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업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 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
- 기업 맞춤형 지원목록

연번	지원명	상세내용	한도 (단위:천원)
1	시제품 제작 (직접제작과 외부제작으로 분류)	◎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제작 지원 - 직접제작: 인건비*, 재료비 및 기타 제반 직접 제작 비용 지원 - 외부제작: 외부전문기관 활용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인건비의 경우, 직접비의 50% 이하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 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가능	30,000
2	제품고급화 (외부전문기관 활용)	◎ 기존 제품 서비스 품질개선, 성능 업그레이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	직접비의 최대 40%
3	기술고도화 (외부전문기관 활용)	◎ 특허포트폴리오 구성, 특허동향분석, 선행특허조사, 특허방어전략 수립, 특허맵 구성 등 기존 기술 고도화 지원	

※ 기업별 최대 30,000천원 이내 비목별 상한 고려하여 예산 편성

3. 추진체계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역량	·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문성	30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지원기업의 Needs 분석 방법 제시	
	·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	
성과목표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	30
	· 성과목표의 실현 전략	
기대효과	·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	40
	·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후속 투자 가능성	
합계		100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인 경우 5점,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 인 경우 2점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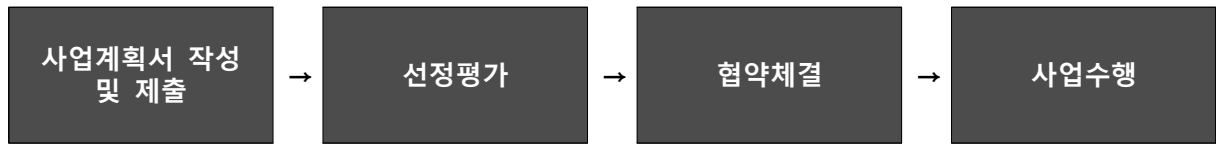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지1] 사업계획서양식(혁신역량초기기업지원)』을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서준혁 (052-217-1766)
 - 전자메일: hyuk@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⑤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시	①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연구소기업 등록증 ③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기타사항: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3

세부지원내용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시험분석 인프라, 국내외 기술 규격 및 품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수혜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30백만원 (대상기업 2개社 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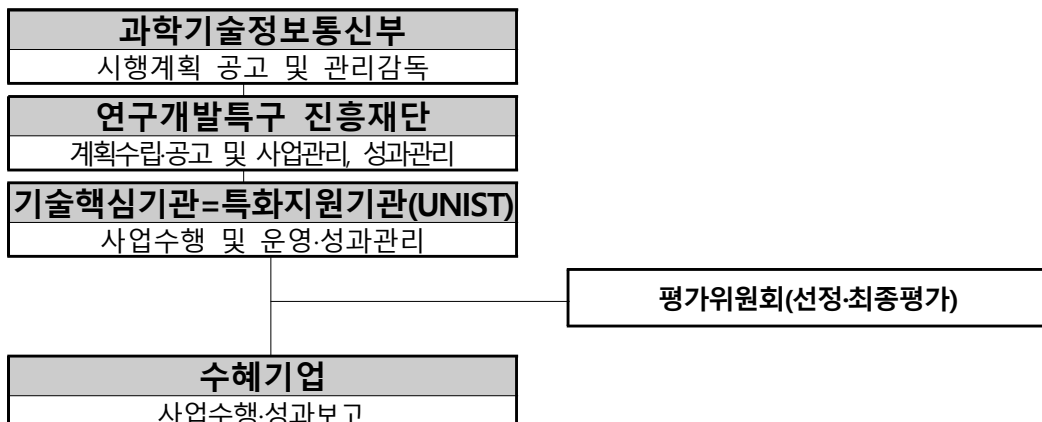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① 특화분야기업
 - ※ 특화분야 : 첨단전자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등을 인증·분석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인증·분석 외부전문기관은 대상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정 후 사업계획서 제출

3. 추진체계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역량	·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문성	30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지원기업의 Needs 분석 방법 제시	
	·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	
성과목표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	30
	· 성과목표의 실현 전략	
기대효과	·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	40
	·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후속 투자 가능성	
합계		100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인 경우 5점,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2점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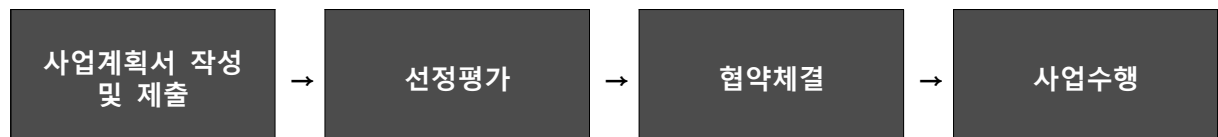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지2] 사업계획서 양식(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을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임종희 (052-217-1765)
- 전자메일: ijhee@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⑤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기타사항: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외 특화분야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Pool 구축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 내재화

■ 사업내용

-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point 전문가 자문 지원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별 ESG 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4백만원 (대상기업 16개社 내외, 기업당 1.5백만원)

-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 일반컨설팅은 통합공고 모집 종료 후 수시모집으로 전환되며, 심화컨설팅은 별도 진행 예정
- ※ 일반컨설팅 수행기업 중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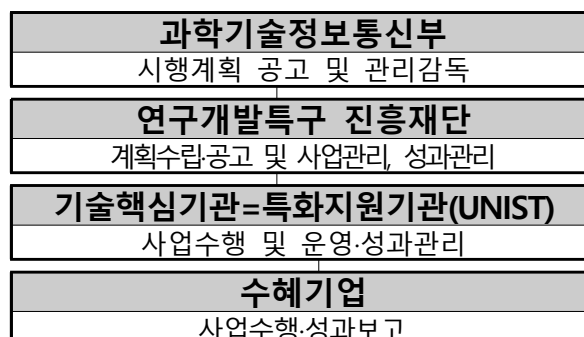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① 특화분야기업
 - ※ 특화분야 :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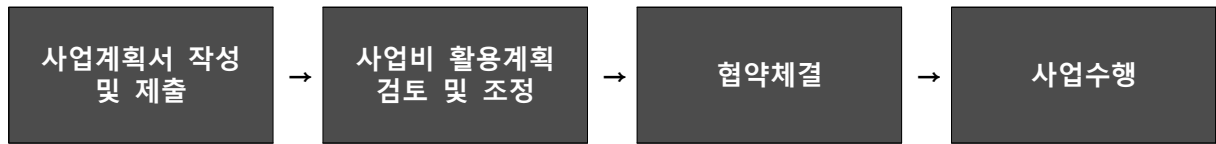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애로기술,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세무, 투자 등 경영분야에 대한 One-point 자문
- 수요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컨설팅 및 자문
 - 지원방법: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 실시

3. 추진체계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지3] 신청서 양식(기업자문지원)』을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임종희 (052-217-1765)
 - 전자메일: ijhee@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업자문지원 일반컨설팅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 ※ 기업자문지원 심화컨설팅의 경우 일반컨설팅 종료 후 평가(요건검토 등) 진행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기업자문지원 신청서 (별첨자료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기타사항: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화분야 관련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주기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사업내용

- 사업화 컨설팅, 후속 R&D 기획, 마케팅 등 혁신역량 확보 및 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30백만원 (대상기업 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① 특화분야기업
 - ※ 특화분야 : 첨단전자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화 전략 수립, 투자유치 및 기타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회계 등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 (후속 R&D 기획 지원)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
- (마케팅 지원) 수혜기업의 직접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신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소요 비용 지원

■ 지원방법

-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비고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전략 수립, 투자유치 및 기타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회계 등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후속 R&D 기획 지원	·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제작,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신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소요 비용 전반 지원	

※ 상기 항목에 한정되지 않으며,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소요비용 전반을 지원(지원 내용의 적정성을 선정평가 과정에서 검토)

※ 기업당 지원금액 최대 10백만원 내에서 항목별 한도를 고려하여 선택 지원

3. 추진체계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역량	·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투자 등 사전기획 실현 가능성	30
	· 외부전문기관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역량	
	·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	
성과목표	· 지원 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의 시급성	30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 및 구체성	
기대효과	·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	40
	·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가능성	
합계		100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인 경우 5점,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2점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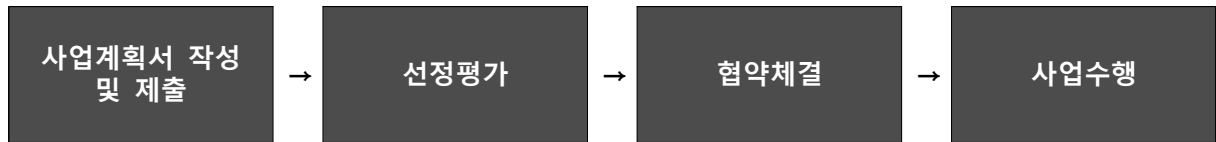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지4] 사업계획서 양식(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을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임종희 (052-217-1765)
 - 전자메일: ijhee@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⑤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기타사항: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강소 특구	특화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UNIST (울주)	미래형 전지 산업	이차전지	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 양극/음극소재, 이차전지 고속충전을 위한 전해질 제조기술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일차전지및 축전지제조업(C282)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C281) / 전자부품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제조업(C191)/기초화학물질제조업(C201) / 기타화학제품제조업(C204)
		수소전지	수소연료전지분 리막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태양전지	유리창 부착형 투명 태양전지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 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탄소섬유 복합재	탄소섬유 복합재 기반 경량 배터리 팩 구조물, 3D프린팅 기반 경량부품 생산장비, 초경량/고강도 프레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화학섬유 제조업(C205)